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37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11/ 전송(02)797-8176
정책국 국장 이병인[6552] 불법의료대응팀장 박재희[6532] 팀원 심영보[6511]/E-mail: kma7892@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715-13334호

시행일자 2026. 3. 1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 관련 주의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선 사법기관에서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을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시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카복시테라피와 메조테라피 주사는 단순한 근육주사와 달리 환자별·부위별 상태에 따라 주입 압력, 속도,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시술 진행 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4.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술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오인하여 지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 전문단체(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 의사회)의 의견과 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협회는 귀 회 소속 회원님들께서 의도치 않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술 시행시 유의하여 주실 것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각 시도 의사협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 의사협의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